

| 제1장 |

목적과 편제

제1조 (목적 및 목표) 삼육대학교는 대한민국과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의 수월성 교육과 전인적 인성교육을 균형지게 실시하여 "미션, 비전, 열정을 지닌 창의적 지식인"을 양성함을 교육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교육 목표를 추진한다.

-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진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적 인간 육성
 - 건전한 인성과 사회 윤리 및 폭넓은 문화적 소양 함양
 - 성경진리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인류애와 환경 보존의식 함양
 - 전문 지식과 실용 기술을 갖춘 창의적 지식인 육성
 -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 함양
 -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 식견과 언어 능력을 지닌 글로벌 리더 육성
 - 인도주의적 가치관과 세계 시민 정신을 지닌 지구촌 봉사자 육성
- [본조 개정: 2013.5.6]

제2조 (편제)

- ① 우리 대학교에 신학대학, 인문사회대학, 보건복지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대학, 문화예술대학,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7.2.23, 2008.1.28., 2012.11.21., 2017.2.27]
- ② 대학원, 신학대학원, 경영대학원, 임상간호대학원은 학칙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1., 2017.2.27]

제2조의 2 (학생의 정원)

- ① 각 대학의 학부와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6, 2008.1.28]
- ② 모집단위별 전공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23.]

제2조의 3 (계약학과 등) [본조 신설: 2009.8.19]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 등은 [별표 2]와 같다.
- ③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2장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3조 (수업 연한 및 재학 연한)

- ① 우리 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건축학과는 5년, 약학과 6년)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건축학과는 10년, 약학과 12년)으로 한다. 단, 전편입 및 재입학 학생의 재학 연한은 우리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개정: 2020.02.24.]
- ②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우리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③ 조기졸업의 수업연한은 7학기(건축학과 9학기, 약학과 11학기)로 한다. 단, 약학과는 해당 없음
[본항 신설: 2008.1.28., 2011.1.31.] [개정: 2020.02.24.]
- ④ 약학대학의 약학과는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항 신설: 2011.4.13.] [개정: 2020.02.24.]
 - 2+4년제 : 약학과와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 소양교육 2년, 약학과 전공교육 4년
 - 6년제 : 약학과에 개설되는 6년 교육과정 이수

| 제3장 |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4조 (학년, 학기)

-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이에 따른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3. 전학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4. 학기 단위를 기간 내에 주차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2.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 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5조 (수업일수) [개정: 2013.4.28., 2016.11.28., 2017.2.27]

- ① 수업은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학기(4주, 8주, 10주)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서를 소속학교(부)에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개정: 2006.1.26]
-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휴업 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강좌를 개설하거나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2.27.]

제7조 (임시휴업일) 입학전형, 졸업식 및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 이외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5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의 2 (학사운영규정) 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

| 제4장 |

부속기관

제8조 (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4.2.13., 2010.3.22. 2018.2.26]

- ① 총장 직속기관
 1. 산학협력단 [신설: 2017.2.27.]
 2. 대학일자리본부 [신설: 2018.2.26]
 3. 입학관리본부 [신설: 2018.2.26]
 4. 교육혁신단 [신설: 2017.2.27.]

- 5. 전인교육원 [신설: 2017.2.27.]
- 6. 학술정보원 [신설: 2018.2.26]
- 7. 캠퍼스사업단
- 8. 예비군대대

- ② 부속기관
 - 1. 대학교회
 - 2. 생활건강증진원
 - 3. 생활교육관
 - 4. 화잇 연구센터
 - 5. 박물관
 - 6. 출판부
 - 7. 신문사
 - 8. 방송국
 - 9. 콘서트홀
 - 10. 인성교육수련원
 - 11. 공통기술헌실

- ③ 부속교육기관
 - 1. 국제교육원
 - 2. 평생교육원
 - 3. 유치원/어린이집
 - 4. 보육교사교육원

④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 2 (중앙도서관) [본조 신설: 2016.7.18.]

- ① 제8조 2항 2목 중앙도서관의 직제와 운영은 다음에 준한다.
 - 1. 중앙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2. 중앙도서관장은 도서 및 학술정보자료의 수집, 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중앙도서관에 전문분야별로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4. 중앙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서의 배치 기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기타 부속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입학, 편입학 등록 및 전과

제1절 시기

제9조 (입학 시기) 입학할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입학과 전편입학은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자격

제10조 (입학 자격) 우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4.2.13., 2013.5.6]

- 1.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하여 졸업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 각 항의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 (편입학 자격)

- ① 편입학은 제3, 4학년에 한하여 대학 편입학을 위하여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7.2.23]
-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3학년에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3학년 입학정원의 5%,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통폐합으로 인해 정해진 존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 특례편입학 할 수 있다. 이때 동일계열 유사학부(과)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26., 개정: 2017.2.27]

제12조 (전과)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4.2.13., 2014.10.27., 2017.2.27]

제3절 절차

제13조 (입학지원 서류)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지원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 서류와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예정 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고등학교 내신 성적(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에 준하는 성적)
- 3. 기타 필요한 서류

단,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 2항의 서류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편입학 지원자는 제1, 2항의 서류 대신 전적대학의 학적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및 입학사정)

- ①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는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3조의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종합하여 사정한다.
 - 1. 고등학교 내신 성적 또는 이에 준하는 성적
 - 2.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 3. 대학별 고사의 성적(단, 대학별 고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 4. 면접고사 성적
 - 5. 실기고사 성적(예체능계에 한함)
 - 6. 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음악학과에 한함)
- ③ 편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부과하여 입학사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입학 및 편입학 허가)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허가하며, 편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특례편입학하는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대학교의 재적생 및 제적생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6.1.26]

제16조 (입학 수속)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이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그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같은 제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장 |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절 휴학

제17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에 21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선도 기회 부여를 위하여 총장이 직원으로 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

제18조 (휴학 기간) 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2.6, 2010.12.17., 2012.7.9., 2013.1.7.]

제19조 (병역으로 인한 휴학) 병역(자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 (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해소 후 첫 학기 초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절 유급, 퇴학, 제적, 재입학, 학사경고

제20조의 2 (유급대상) 유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04.12.13] [개정: 2008.1.28, 2009. 2. 18, 2010.12.17., 2016.2.1., 2018.2.26]

1. 1년간 1, 2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이 1.85 미만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
2. 1년간 전공 및 전공필수과목 중 F학점이 3개 이상인 자 (간호학과, 약학과에 한함)

제20조의 3 (유급시기) 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04.12.13]

제20조의 4 (재이수 범위)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유급된 자는 성적 부진에 의한 제적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1, 2학기 학점은 소실되며 등록 후 해당 학년 1, 2학기 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채플과 교양의 학점은 인정해 주며,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은 15학점(약학과 20학점)으로 제한한다. 약학과는 2회 유급 시, 간호학과는 3회 유급시 제적된다. 또한 1학기만 이수하고도 유급대상자가 되는 자는 그 다음 학기에 휴학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2008.3.10, 2009.3.2., 2012.1.9., 2018.2.26]

제20조의 5 (유급절차) 제20조의 2의 각 호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 전 20일 이내에 유급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본조 신설: 2004.12.13]

제21조 (퇴학 및 제적)

- ① 지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상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처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예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 처분을 받은 자
 4. 학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학 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를 받은 자. [개정: 2012.9.27]

7. [삭제: 2007.2.23]

제22조 (제적자의 재입학)

-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단,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락한다. [개정: 2006.1.26., 2012.9.27]
-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제21조 1호와 2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9.27.]
- ③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 개시 전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2.9.27.]

제23조 (학사경고)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등 학사경고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장 |

교육과정의 이수

제1절 교육과정

제24조 (교과목의 분류)

- ① 우리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교양과목이라 함은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하며 전공과목이라 함은 그 학과의 전문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 ③ 교양과목은 인문학 영역, 사회과학영역, 자연과학영역, 문화예술영역, 인성교양영역 등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4.2.13., 2016.2.1]
- ④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의 학사운영에 따라 정하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21., 2017.2.27]

제25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습, 실습, 실기, 체육,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수업과 등록

제26조 (수업시간표) 매주의 수업시간표는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6조의2 (휴·보강) 교과목 담당 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 교무처장의 승인 후 보강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3.16]

제27조 (등록)

-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1.7.]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5.]
- ② (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04.12.13]
 1.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1호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28조 (시험) 각 과목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퀴즈나 과제를 평가 등 수시 평가를 부과한다.

제29조 (응시자격) 학생은 3주 이상의 수업에 결석하면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단, 질병, 기타 사고로 부득이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30조 (학업성적)

- ①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 ②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실시 24시간 이전에 증빙서류(진단서, 소집영장 원본 및 사본, 부고, 기타)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추가시험으로는 B+를 상회할 수 없다.
- ③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성적 분포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실점수	등급	평점	실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0	70~74	C	2.00
90~94	A	4.00	65~69	D+	1.50
85~89	B+	3.50	60~64	D	1.00
80~84	B	3.00	59점 이하	F	0
75~79	C+	2.50	합격	P	불계

제4절 이수의 인정

제31조 (학점인정)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D 이상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는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31조의 2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학점 인정)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2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 조 제2항에 따라 군복무중인 자가 본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소정의 등록 및 수강 절차를 거쳐 원격강좌로 취득한 학점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제출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연 6학점)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조기졸업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0.12.17., 개정: 2012.1.9]

제31조의 3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제1항 3호에 따라 고교생이 본 대학 진학 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본조 신설: 2013.10.28.]

제31조의 4 (K-MOOC 강좌 취득학점 인정) 지식 공유를 주도할 온라인 K-MOOC 개설 강좌 중 대학이 정한 과목을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총 3학점까지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2.27]

제32조 (학점의 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3조 (학점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34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의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7학점으로 하고 매 학기 최대 취득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졸업총족 학점에 따라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과 최대 취득학점은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8]

제35조 (부전공)

- ① 재학 중 타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 (복수전공)

-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제1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6조의 2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본조 신설: 2014.4.10., 2017.2.27]

- ① 2개 이상의 학위과정이 연계 또는 융합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는 자기설계전공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③ 모집 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융합(공유)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7조 (학석사 연계과정) [본조 신설: 2003.1.10]

-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38조 (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약학과 2+4년제 165학점, 통학 6년제 ____학점, 건축학과 170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점에 의한 학년 수료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6., 2007.2.23.][개정: 2020.02.24.]

학년	전학과(약학과)	학년	전학과(약학과)
제1학년	34학점 이상(46학점 이상)	제4학년	130학점 이상(165학점 이상)
제2학년	68학점 이상(92학점 이상)	제5학년	170학점 이상
제3학년	102학점 이상(138학점 이상)	제6학년	???

제39조 (재입학생의 학점) 재입학생에 대하여서는 종전에 수학한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단일전공과정 학점)

- ①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2.27]
- ② 재학 중 전공교과목을 7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단일전공과정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06.1.26, 2007.2.23, 2009.11.9]
- ③ 단일전공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제41조 (전과 및 편입학생 학점) 전과 및 편입학 한 자에 한하여서는 전적대학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해당 전과 및 편입학과의 과정과 공통되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성적과 학점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자세한 규정은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42조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 특례 등) [본조 신설: 2003.1.10]

- 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3학년 이상 수료한 후부터 학교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수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할 수 있는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정: 2006.6.8]

제43조 (학위 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학위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6.3.15 2006.6.8, 2008.1.28, 2009.3.2., 2014.4.10, 2014.12.23., 2017.2.27]

대학명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신학대학	신학과	신학사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전공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영어통번역전공	문학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유아교육과	문학사
보건복지대학	일본어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건관리학과	보건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상담심리학과	문학사	물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사
약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이학사		
	약학과	약학전문학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공학사	동물생명자원학과	이학사
	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이학사
	메카트로닉스전공	공학사	화학생명과학과	이학사
문화예술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사	음악학과	음악학사
	아트앤디자인학과	디자인학사		

연계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연계전공	중독심리전공	문학사	스마트헬스케어전공	이학사
	미디어콘텐츠전공	문학사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연예술콘텐츠전공	문학사	외식산업경영전공	이학사
	유아건강교육전공	문학사	운동재활전공	이학사
	데이터과학전공	경영학사	중독재활전공	보건학사
	마케팅사회조사경영	경영학사	건강운동관리전공	체육학사
사회직경제전공	경영학사			

융합(공유)전공	학과/전공	학위	학과/전공	학위
융합(공유)전공	바이오그린디자인	이학사	스포츠의학전공	체육학사

제43조의 2 (복수학위 수여)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하여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복수학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고 협정 대학간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0.5.24., 2017.2.27]

제44조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 부전공 및 복수전공 영역은 우리 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 혹은 학부 전공으로 한다. 단,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건축학과는 복수전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2.23, 2010.3.22, 2010.12.17]

제45조 (졸업)

- ① 학칙 제3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에 심화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연계전공, 자기설계

- 전공, 융합(공유)전공, 복수전공(부전공, 교직, 평생교육사 과정 포함)도 재학연한 이내에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교육과정의 졸업학점(이수표 참조). [개정: 2014.12.23., 2017.2.27]
- ②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130학점(간호학과 135학점, 약학과 2+4년제 165학점, 약학과 통합 6년제 ____ 학점, 건축학과는 17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한다. [개정: 2006.1.26., 2016.2.1., 2017.2.27.]
- ③ 7학기 동안에 4학년의 전 과정(건축학과는 9학기 동안에 5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전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6, 2007.2.23]

제45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본조 신설: 2017.2.27.][개정: 2019.3.25.]

-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 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 8 장 |
학생 활동**

제46조 (학생회)

- ① 학풍을 쇄신하고 면학을 심화시키며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 및 각 자치기구를 둔다.
-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 ③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총학생회 및 각 자치기구 포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생활지도위원은 학생지원처장(의장), 학생지원팀장(서기), 교목실장, 교무과장, 남·여생활관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제47조 (학생회비) 우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학점등록생 포함)은 자율적으로 총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6.3.21]

제48조 (학생단체의 조직 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학생지도)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효과적인 학생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교수들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기타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생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0조 (학생활동의 규제)

- ①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집단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 거부를 포함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51조 (학생활동의 승인 사항) 학생회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생활동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기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3]

1. 학급단위 이상의 공적 행사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제52조 (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

처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53조 (징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한다.
[개정: 2004.2.13]

제54조 (징계자의 재입학)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학교교수회의 및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원처장이 제정하고 총장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제55조 (장애학생 지원 및 차별 금지) 우리 대학교의 특별전형을 통하여 신입학 및 편입학 한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학습도우미 파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학금 지급 등의 교육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 차별을 금지하여야 하며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학생지원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04.2.13]

제 9 장 규율 및 상벌

제56조 (징계처분) [개정: 2004.2.13]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가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무성한 자
5. 음주, 흡연, 마약복용, 기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과 학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개정: 2017.2.27.]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57조 (출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결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 (포상) (삭제) [개정: 2006.1.26.]

제 10 장 직제

제59조 (교직원의 직제 및 정원) 우리 대학교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수, 강사, 조교 및 사무직원 등의 교직원을 두고, 그 직제 및 정원은 별도로 한다.

제59조의 2 (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3.5.6]

제60조 (임시직원) 전 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사무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61조 (총장 및 처장)

- ① 1인을 총장으로 하여 우리 대학교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 ② 교수 중 1인을 부총장으로 하여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교수 중 1인을 교목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신앙과 교육이념 구현문제를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④ 교수 중 1인을 교무처장으로 하여 교무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⑤ 교수 중 1인을 학생지원처장으로 하여 학생의 제반 활동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⑥ 교수 중 1인을 기획처장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업무를 시행하게 한다.

⑦ 1인을 사무처장으로 하여 관리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⑧ 교수 중 1인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하여 대외협력 관계를 총괄하게 한다.

⑨ 교수 중 1인을 입학처장으로 하여 입학행정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2.27]

⑩ 교수 중 1인을 연구처장으로 하여 연구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2.27]

⑪ 교수 중 1인을 전인교육원장으로 하여 인성교육, 사회봉사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2.27]

⑫ 교수 중 1인을 교육혁신단장으로 하여 교수학습개발, 교육혁신 등의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하게 한다. [신설: 2017.2.27]

⑬ 총장은 제 위원회를 두고 학사 및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1 장 교수회

제62조 (교수회) 우리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 이를 조직한다.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제63조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총장이 제의하는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교수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출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제64조 (교수회의 정족수) 교수회는 재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장 등록금

제65조 (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6조 (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7조 (휴학자, 복학자의 등록금) 휴학자의 등록금은 납입 기일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면제한다. 복학 시는 그 학기부터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 (등록금의 감면 제한)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9조 (등록금의 징수시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 (반환금지) 납부된 등록금은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1조 (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상이군인 혹은 순국지사의 유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 운영협의회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등록금 및 기타 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2조 (등록금 체납자의 처리) 총장은 총 수업일수의 1/4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13장 외국인

제73조-1(외국인 학생의 입학)

- ①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학력을 평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73조-2(외국인 학생의 학사관리) 외국인 학생의 교육과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에 관한 지침에 준한다.

제74조 (이수증서 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 이수율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75조 (특별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교 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제 14장 공개강좌

제76조 (공개강좌의 개설) 우리 대학교의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할 수 있다.

제77조 (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하여 예고한다.

제78조 (공개강좌의 허가 등)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한 개강 중 수시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수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5장 장학금

제79조 (장학금)

- ① 우리 대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장학생 선발 및 급여는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 16장 학교기업

제80조 (학교기업)

- ① 교육연구 및 기업 활동의 연계, 기술개발이전, 현장실함실습, 사업화,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교원 및 학생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을 둔다.
- ②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은 삼육대학교 교지 내에 위치한다.
- ③ 삼육대학교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동 사업을 위해 경영정보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 2. 원예산물생산 및 교내외 현장교육(동 사업을 위해 원예학과와 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신설: 2013.1.7]
 - 3. 기타 사업종목의 발생 시 추가로 정한다.
- ④ 기타 학교기업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본조 신설: 2005.6.10]

제 17장 대학평의위원회

제81조 (대학평의위원회) 이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삼육학원 법안정관 제8장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제82조 (운영규정)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장 자체평가

제83조 (자체평가) [본조 신설: 2009.5.4]

- ①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에 따라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장 등록금심의위원회

제84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⑦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본조 신설: 2011.2.25]

제85조 (운영규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2.25]

제 20장 학칙 개정 절차 [본장 신설: 2011.4.13]

제86조 (학칙개정안 공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한다.

제87조 (학칙개정 및 공포) 학칙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개정된 학칙은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88조 (보고) [삭제: 2015.3.16]

제 21 장 학위검증위원회

제89조 (학위검증위원회) 입학생(편입과 재입학 포함),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위원회 등에서 학위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 자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위검증위원회를 둔다.

제90조 (운영규정) 학위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장 부칙

제9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본조 신설: 2016.7.18.]

- ① 대학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도서관위원회는 총장, 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팀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지원처장, 연구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시설관리팀장, 복지지원팀장, 정보전산원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③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3 장 부칙

부 칙
본 학칙은 196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4년 3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 개정은 199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낙농자원학과(야간) 학생은 응용동물학과(야간)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낙농자원학과(야간) 학생으로서 1996년 2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낙농자원학과(야간)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영양학과 학생은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영양학과 학생으로서 1997년 2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영양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전산통계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환경디자인학과 학생은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재활치료학과 학생은 물리치료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재활치료학과 학생으로서 2000년 2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재활치료학과 소속으로 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 생활체육학과 학생은 생활체육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생물학과 학생은 생명과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생물학과 학생으로서 2001년 2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생물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물리치료학과의 학위명을 보건학사에서 물리치료학사로 변경한다. 다만, 200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기독교상담학과 학생은 상담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상담학과 학생으로서 2005년 2월 졸업하는 학생부터 상담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환경원에디자인학과(2명)의 계열을 예체능계에서 자연과학계열로 변경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경영정보학과(2명), 경영정보학과(1명), 식품영양학과(1명), 원예학과(1명), 생활체육학과(1명), 사회복지학과(2명), 환경원에디자인학과(2명)의 입학정원을 2005학년도부터 총 10명 감축(780명에서 770명)하여 선발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경영학과 학생은 디지털경영학부 학생으로, 컴퓨터학과 학생은 컴퓨터과학부 학생으로, 응용동물학과 학생은 동물과학부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응용동물학과 학생으로서 2009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응용동물학과 소속으로 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삼육의명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삼육대학교 유아교육과로 특례편입학한 학생은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삼육의명대학 졸업생은 교육인적자원부 통합 승인(2005. 12. 2)으로 학적이 이관되어 삼육대학교 총장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부 보건정보학 전공 학생은 보건관리학전공 학생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영미어문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학생은 영어커뮤니케이션전공 학생으로, 예술디자인학부 학생은 미술디자인학부 학생으로, 디지털경영학부 재무회계전공 학생은 회계전공 학생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신학과는 인문사회대학에서 신학대학 소속으로 변경하고, 약학과는 보건복지대학에서 약학대학 소속으로 변경한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5명 증원됨에 따라 영미어문학부(1명), 사회복지학부(1명), 상담학과(1명), 디지털경영학부(1명), 음악학부(1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선발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디지털경영학부 회계전공 학생은 경영회계전공 학생으로, 동양어학부 중국어전공 학생은 중국어과 학생으로, 일본어전공 학생은 일본어과 학생으로, 환경원에디자인학부 원예학전공 학생은 원예학과 학생으로, 환경원에디자인전공 학생은 환경원에디자인학과 학생으로, 음악학부 학생은 음악학과 학생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약학대학 약학과가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대신 해당 모집인원 30명과 영미어문학부(6명), 음악학과(14명), 화학과(5명), 생명과학과(4명)를 감축하여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20명 증원하고, 기초의약학과(30명)를 신설하며, 중국어과(3명), 일본어과(3명), 사회복지학부(3명)를 증원하여 선발한다.
 ④ 환경원에디자인학부를 학과 모집단위로 선발함에 따라 원예학과(38명), 환경원에디자인학과(37명)로 선발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미술디자인학부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학생은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생으로, 미술컨텐츠전공 학생은 미술컨텐츠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컨텐츠학과 학생으로서 2011년 2월 졸업하는 학생부터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미술컨텐츠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상담학과' 학생은 '상담심리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상담학과' 학생으로서 2011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상담학과' 소속으로 한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학생은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환경원예디자인학과' 학생으로서 2011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환경원예디자인학과' 소속으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교육부(2013. 8.26 대학학사평가과-3122)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6년제 편입생의 학년 및 학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학년 : '1~4학년'을 '3~6학년'으로 한다.
 2. 학번 : '입학년도 기준'에서 '입학년도에서 2년 전 기준'으로 한다.
 3. 2011~2013학년도 입학한 학생은 위 호로 소급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보건관리학과'의 계열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자연과학계열로 계열을 변경함에 따라 2014학번의 등록금은 자연과학계열 기준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③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학생으로서 2014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부 보건관리학전공' 학생은 '보건관리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사회복지학부 보건관리학전공' 학생으로서 2014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보건관리학전공' 소속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환경디자인원예학과'로 통합된 원예학과와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7학년도(2018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원예학과와 환경그린디자인 학과의 휴학자는 '환경디자인원예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③ '동물생명자원학과'로 통합 신설된 동물과학부의 동물자원학전공과 동물생명공학 전공은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7학년도(2018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동물과학부(동물자원학전공과 동물생명공학전공)의 휴학자는 '동물생명자원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④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중국어과' 학생은 '중국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중국어과' 학생으로서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중국어과' 소속으로 한다.
 ⑤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일본어과' 학생은 '일본어학과'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다만, '일본어과' 학생으로서 2015년 8월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일본어과' 소속으로 한다.

⑥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생활체육학과의 학위명을 '이학사'에서 '체육학사'로 변경한다. 다만, 2016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 '영어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어커뮤니케이션전공' 학생은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영어통번역전공' 학생으로 소속 학부 및 전공을 변경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학 당시 학부(전공)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환경디자인원예학과'로 통합된 원예학과와 환경그린디자인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7학년도(2018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원예학과와 환경그린디자인 학과의 휴학자는 '환경디자인원예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환경디자인원예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③ '동물생명자원학과'로 통합 신설된 동물과학부의 동물자원학전공과 동물생명공학 전공은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7학년도(2018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동물과학부(동물자원학전공과 동물생명공학전공)의 휴학자는 '동물생명자원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동물생명자원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④ (경과조치) 2017학년도부터 모집단위가 통합되어 신설된 학과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화학생명과학과'로 통합된 화학과와 생명과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9학년도(2020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화학과와 생명과학과의 휴학자는 '화학생명과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화학생명과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2.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로 통합된 컴퓨터학부와 카메카트로닉스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9학년도(2020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컴퓨터학부와 카메카트로닉스학과의 휴학자는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3. '아트앤디자인학과'로 통합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미술컨텐츠학과는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9학년도(2020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미술컨텐츠학과의 휴학자는 '아트앤디자인학과'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아트앤디자인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부 칙

- ① 본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는 2020학년도부터 컴퓨터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모집하며, 이전 재학생들은 구학칙에 의하여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2학년도(2020년 8월말)까지 존속한다. 단, 기존의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의 휴학자는 '컴퓨터공학부'로 복학하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통합 전 학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컴퓨터공학부'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 ③ 단과대학 재편성에 따라 간호사학위완성과정(RNB)을 간호대학에 당면 편입한다.
- ④ 약학과는 학제개편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현재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함께 시행하며 2024학년도부터는 통합 6년제로 모집한다.

부 칙

「학부(과) 편성 및 입학 정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세부전공	2019	2018	2017	2016	2015	
신학 대학	신학과		35	35	35	35	35	
인문 사회 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	-	-	-	-	
		영어커뮤니케이션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90	90	90	90	90	
		영어통번역전공						
	중국어과		-	-	-	-		
	중국어학과		34	34	34	34		
	일본어과		-	-	-	-		
	일본어학과		34	34	34	34		
	경영학과		57	57	57	57		
	경영정보학과		40	40	40	40		
유아교육과		50	50	50	50			
자유전공학부		-	-	36	45	35		
보건 복지 대학	사회복지학과		28	28	28	28	30	
	보건관리학과		30	30	30	30	30	
	상담심리학과		39	39	39	39	39	
	식품영양학과		46	46	46	46	50	
	생활체육학과		45	45	45	45	50	
	간호학과		65	65	65	65	65	
	간호학사학위특별과정		(40)	(40)	(40)	(40)	(40)	
	물리치료학과		40	40	40	40	40	
약학 대학	약학과		(30)	(30)	(30)	(30)	(30)	
	기초의약과학과		-	-	-	-	-	
과학 기술 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시스템전공				75	80	
		소프트웨어전공						
		응용컴퓨팅전공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111	111	111			
		소프트웨어전공						
	메카트로닉스전공							
	화학과		-	-	-	40	44	
	생명과학과		-	-	-	33	36	
	화학생명과학과		73	73	73			
	동물과학부	동물자원학		-	-	-	-	-
		동물생명공학		-	-	-	-	-
	동물생명자원학과		60	60	60	60	60	
	환경디자인원예학과		75	75	75	75	75	
	원예학과		-	-	-	-	-	
카메카트로닉스학과		-	-	-	36	39		
문화 예술 대학	건축학과		36	36	36	36	40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	-	-	47	50	
	미술컨텐츠학과		-	-	-	37	40	
	아트앤디자인학과		84	84	84			
	음악학과		50	50	50	50	55	
	환경그린디자인학과		-	-	-	-	-	
계		1,122(70)	1,122(70)	1,158(70)	1,167(70)	1,207(70)		

제○○○○호

학 위 증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학과, ○○학사
 ○○○학과, ○○학사
 ○○○학과, ○○학사

부 전 공: ○○○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학위등록번호: 삼육대 ○○○○(학)○

○○

제○○○○호

학 위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 공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의한
○○학(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를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삼육대학교 총장 ○○○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삼육대-학점-○○○○-학-○○○